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기간

- 사전조사: 2013.07.11. ~ 07.18. (8일간)
- 실지감사: 2013.08.06. ~ 08.08. (3일간)

☐ 감사인원 : 총 6명

☐ 지적사항 : 2건 (징계 2건)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이번 감사는 공사 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실태를 조사하여 2013.05.03. 1차 처분완료 하였으나 일부 직원의 음주운전사고 사실과 운전경력증명서 변조에 대한 혐의가 추가 발견되어 음주운전사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와 공직기강을 확립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2. 감사대상

사전조사 결과 운전경력증명서 변조 제출자 및 음주운전사실확인서 미제출 직원 2명으로 정하였음

3. 감사기간 및 인원 등

- 사전조사: 2013.07.11.~07.18. (8일간) 청렴윤리부 직원 4인(32일)
- 실지감사: 2013.08.06.~08.08. (3일간) 청렴윤리부 직원 2인(6일)

4. 감사방법 및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직원 음주운전사실 추가 조사”로 다음 사항을 집중 점검함.

○ 전체 임직원들이 제출한 서류를 전면 재확인

- 『직원 음주운전 실태조사』(청렴윤리부-451, 2013. 03.08.) 당시 제출한 서류 전면 재확인
- 서류 변조 후 제출여부 조사
- 음주운전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제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 향후 음주운전 근절과 복무기강 정립에 중점을 두었음

II. 감사처분 현황

감사결과 처분요구

징 계 요 구

제 목 복무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대 상 기 관 ○○.○○본부 ○○○지사

징계대상자 기술직3급 ○○○

징 계 종 류 징계(○○ ○○)

징 계 사 유

위 기술직3급 ○○○은 2013.02.15.부터 2013.08.06. 현재 ○○.○○본부 ○○○지사의 기관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으로서, 지사운영·관리 및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 및 제3호(품위유지의 의무),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7조(품위유지) 및 제8조(법규준수), 및 제31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에 따라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하여야 하나, 특정개인이나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없애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술직3급 ○○○은 공사 직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제 규정·규칙과 음주운전 금지를 위한 특별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사정기관(경찰)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 법규를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동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와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1회 받았음에도 2013.03.22. 감사자료 제공 시 운전경력증명서상의 위반내용을 “자료 없음” 으로 변조·제출하여 1차조사시 정당한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는 징계규칙 제8조 제3항 관련 「음주운전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견책” 처분에 해당되며, 「대한지적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31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등 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 사장(인사부장)은 음주운전에 따른 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관련 직원에게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3호 (품위유지의 의무),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제1항, 제7조(품위유지) 및 제31조 외 규정을 위반 하였으므로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관련자를 **신분상조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본부장은 「복무규정」,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등 제 규정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재강조(문서지시 또는 집합교육 시 교육 등)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정확한 정보의 보고 등으로 음주운전 Zero화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징 계 요 구

제 목 복무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대 상 기 관 ○○.○○○○본부 ○○○지사

징계대상자 기술직4급 ○○○

징 계 종 류 징계(○○ ○○)

징 계 사 유

위 기술직4급 ○○○은 2013.03.04.부터 2013.08.08. 현재 ○○.○○
○○ ○○○지사에서 현장 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 및 제3호 (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라 “직원은 공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지적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제1항 및 제7조(품위유지) 및 제8조(법규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술직4급 ○○○은 공사 직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제 규정·규칙과 음주운전 금지를 위한 특별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사정기관 (경찰)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 법규를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동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와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 1회 및 대물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2013.03.22. 감사자료 제출 시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정당한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는 징계규칙 제8조 제3항 관련 「음주운전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견책” 처분에 해당되며, ‘13.03.08. 직원음주운전 실태조사(청렴윤리부-451, 457) 당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 사장(인사부장)은 음주운전에 따른 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관련 직원에게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3호 (품위유지의 의무),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제1항 및 제7조(품위유지), 전 직원 청렴서약 의무 불이행 및 음주운전 금지 등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관련자를 **신분상조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본부장은 「복무규정」,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등 제 규정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재강조(문서지시 또는 집합교육 시 교육 등)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 Zero화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